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56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조경태·이헌승·서천호

백종헌 • 곽규택 • 김예지

김용태 • 서일준 • 고동진

김소희 • 우재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에 대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 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육성과 장려를 통해 수직농장 스마트팜을 통해 수경재배(水耕栽培) 되는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농산물은 무농약으로 재배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끼치는 오염도 적어 친환경과 유기의 조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토양에서의 생산 전제로 인하여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음. 또한, 미국에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수경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유기농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확대하고자함(안 제2조제1호・제3호).

법률 제 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토양에서의"를 "토양에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수경재배(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지하여"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수경재배(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한다]을 활용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1
다양성을 증진하고, <u>토양에서</u>	토양에서
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	준에 적합한 방식[수경재배
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	(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한다]
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	<u>으로</u>
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	
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3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u>유지하여</u> 환경을 건	<u>유지하거나 대통</u>
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한 방식[수경재배(水耕栽培)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 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그 과정을 말한다.

<u>방식을 포함한다]을 활용하여</u>
4. ~ 9. (현행과 같음)

4. ~ 9. (생 략)